

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[]등록 []변경등록 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교육기관명(상호)	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소재지		전화번호	
변경사항 (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)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

첨부서류	등록신청하는 경우	1.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·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.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(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), 졸업증명서,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.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·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)와 시설·장비 명세서 4.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	변경등록신청하는 경우	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. 등록증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. 법인인 경우: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. 개인인 경우: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사업자(주민)등록번호: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공지사항

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검토	➔	결재	➔	등록증 발급
신청인		지방고용노동청		지방고용노동청		지방고용노동청장		